

西紀 1983年 8月 2日 制定施行
西紀 1985年 7月 22日 改定施行
西紀 1986年 2月 14日 改定施行
西紀 1988年 1月 1日 改定施行
西紀 1990年 4月 30日 改定施行
西紀 1991年 1月 1日 改定施行
西紀 2002年 8月 8日 改定施行
西紀 2020年 9月 17日 改定施行

出張旅費規定



仁川廣域市個人택시운송事業組合



목 차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종 류)

제 4 조 (지 급)

제 5 조 (장기출장)

제 6 조 (초과여비)

제 7 조 (외국출장여비)

제 8 조 (예외결정)

제 9 조 (시 행 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본 조합 임원 및 직원이 업무상 출장에 대한 경비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임원 및 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출장할 때에는 별도의 정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단, 비상근 임원 및 대의원의 출장시에는 임원에 준하는 출장여비 외에 회의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3 조 (종 류)

출장여비는 근무지내와 근무지외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 4 조 (지 급)

1. 출장 여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형편에 따라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2. 출장일수가 1일 이상이 초과하면 별표1의 해당 금액에다 일수를 승산하여야 한다.
3. 정기 임원회 및 감사 업무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일정액의 출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직원 출장비는 숙박 출장에 한하여 숙박비, 교통비, 식대를 지급하고 일일 출장비는 교통비에 한하여 지급한다(타 차량 사용 시 유류대 지급)

제 5 조 (장기출장)

이사회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6 조 (초과여비)

이사회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7 조 (외국출장여비)

이사회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8 조 (예외결정)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시 행 일)

본 규정은 1983년 8월 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6년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8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근무지내 직원 출장				
4시간 이내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근무지외 출장				
구분	일비(1일당)	식비(1일당)	숙박비(1일당)	교통비
임원	2만원	3만원	5만원	실비
직원	2만원	3만원	5만원	실비